■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1)] <개정 2018.10.9.>

(1 쪽)

관리 번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 급 명 세 서

([■]소득자 보관용[]발행자 보관용[]발행자 보고용)

		(1 7)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	모						
내·외국인	!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	세율적용		여1 /	부2					
외국법인소	:속 파견근로	자여부	여1 /	<u>부</u> 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여부	1	세대주1 , 세대원2							
여만전사구	부	계속근로	1 중도	튀사2					

		(1)법인명(상 호)	한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표 자(김장성					
징 수 의무자	당 수	(3)사업자등록번호	314	3148206063			인 등	160171-0001632					
9	비무자	(3)-1 사업자단위과세:	자 여부	여1 / <u>부2</u>			종사업	성장 일련번호					
		(5)소 재 지 (주소)	대전										
		(6)성 명	장인	[혁		(7)주	민 등	록 번 호	930803-10	5881	19		
1 4	노득자	(8)주 소	경기	I도 부천시 상이로 4	H6 (상동, 벚꽃마을세종그랑시아)								
		구 분	•	주(현)	종(전)			종(전)	(16)-1납세조합		합 계		
		(9)근 무 처 명		한국생명공학연구 원									
١,		(10)사업자등록번호		3148206063									
-근무처별소특명세		(11)근무기간		2018-06-25 ~ 2018-12-31									
ᅥ처		(12)감면기간		~									
별		(13)급 여		9,940,000		0		0		0	9,940,000		
솔		(14)상 여		0		0		0		0	0		
늘	/1E	(15)인 정 상 여)-1 주식매수선택권 행/	HAIOI	0		0		0		0	0		
세		/- 1 주석배추진택권 행/ 15)-2 우리사주조합인출		0		0		0		0	0		
////		.15)-2 구디자구조합인 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		0		0		0		0	0		
	(13)	(15)-4 직무발명보상금			0			0 0		0			
		(16) 계		9,940,000		0	0		0		9,940,000		
	(18)국	외근로	MOX										
111	(18)-1	야간근로수당	OOX										
	(18)-2	출산 보육수당	QOX										
과	(18)-4	연구보조비	HOX										
세	(18)-5												
강	(18)-6												
년	~												
소	(18)-2	8											
및감면소득명		- - - 현보조수당	Y22										
세		과세소득 계											
		감면소득 계											
	(20)	구	분		(78)소	 (78)소 득 세		(79)지방소득세		 (80)농어촌특별세			
	(72)				(: -7-	0				00/801272/11			
III			110171				0		0				
세	기납 ⁵ 세 9	(73)종(전)근무지 부 (결정세액란의 세액 기재)	사업자 등록번호				0		0		0		
액명	세 의	'					0				0		
세	(75)	(74)주(현) 근무지				101	,880,				0		
		납부특례세액	70) /74)	(75)]		-101,880			0	0			
	[(/6)]	· 감 징 수 세 액{(72)-(/3)-(/4)-	-(/5)}		-101	,880		-10,140		0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19년 02월 28일

징수(보고)의무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 무 서 장 귀하

국민연금:459,000 건강보험:341,700 고용보험:66,300

	연간	근로스	6),다인 노득)	외국인	단일제	율 적용시에	9,940,000	(48	1,720,0							
(22))근로	2소득	공제				5,476,000	(49	(49)산 출 세 액							
(23))근로	소득	금액				4,464,000		(50)							
	기	(24)	본	인			1,500,000	세	(51)	조세특	례제한	법」((52) 제	외)			
	기 본 공	(25)	배 우	자				액 감 면	(52) 「	조세특	례제한	법」제30조				
	제	(26)	부 양 기	ㅏ족 (0	명)			면	(53) 3	도세조의	‡ n					
	_	(27)	경 로 두	으 대 (0	명)				(54) k		 크 계					
	주 가	(28)	장 애	인 (0	명)			┢		<u>- </u>				56,7		
	추가공제	(29)	부 녀	자					(33) [114 (O. FH)	30,7		
		(30)	한 부 5	그가 족					(56)자	녀		공제대상지				
		(31) -	로민연들	무보험료	공제	대상금액	459,000			ı	출산·입양기		나 (0 명)			
		(01)	31)국민연금보험료공제 			공제금액	459,000			(57) 7	·학기술	이공제	공제대상금액			
	여		⑦공무	원연금		대상금액		-		(37)1	1772		세액공제액			
		(20)				공제금액		$\frac{1}{2}$	여글	(58) 「	근로자퇴	직금여보장	공제대상금액			
	고 험	(32) 공적 연금	(J) 군인	연금		대상금액 공제금액		$\frac{1}{2}$	연금 계좌	현금 (58)「근로자퇴직 비좌 법」에 따른 퇴직		직연금	세액공제액			
~	연대보험료의제	연금 보험	@ J 31	=1	TI OI OI	대상금액		1					공제대상금액			
종	제	보험 료 공제	[딸사립 금	학교교	식원연	공제금액		1	(59)연		59)연금저축		세액공제액			
耐		االات				대상금액		1								
			@별정	우체국(연금	공제금액		1				보장성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소			(개건강	보험료(노인장	대상금액				(60)보	히근		세액공제액			
		(33)	기효량	보험료	포함)	공제금액						장애인전용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빠		보험 료	∩ ¬8			대상금액						1.0.0	세액공제액			
공 제			UD 고용	보험료	공제금액					(61)의료비		'	공제대상금액			
	III		沙주택임차차입 금 원리금상환 액		대출기	관							세액공제액			
				거주자								공제대상금액				
				2011년 이전차 입문 2012년 이후차 기주 안 (15년 이상) 가작 안 (15년 이상) 작악 악학 의 등학 기주 안 (15년 이상) 학학 의 등학 기주 안 (15년 이상) 학학 기주 안 (15년 이상)	15년미	만				(62) <u>I</u>	2육비					
					15년~2	29년							세액공제액			
	별				30년 이상			셌			2	10만원 이하	공제대상금액			
	별소득공제	(34)			고정금 환 대출	리・비거치상		액 공 제			정치 자금	0101	세액공제액			
	제	(34) 주택 자금			T HFOL			M			기부	10만원	공제대상금액			
					그밖의			-	세액 공제			초과	세액공제액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	공제대상금액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63)	UH 전	!기부금	세액공제액			
						그 밖의 대출				기 부 금	@97I	사주조하기브				
					10년 ~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급		사주조합기부				
		(35)	L 기부금(L 이월분)	1 .20			1					세액공제액			
ļ		(36)		/				1		(종)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외)		공제대상금액			
(37)) 차 2	<u>((667</u> : 소득					2,505,000	1			(91)	그제ᅬ/	세액공제액			
/			<u></u>	<u> </u>			, -,0	1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u> </u>			<u>'</u> 상공인 공	등제부금			1			(종교명	단체) 	세액공제액			
) (가청약					1		(64)	——— Й					
コ	마련	40) 주택 반면저축 노득공제 (과근로자주택마면저축								(65) H		 65) 표준세액공제		46,4		
반	소트								(66) -	L` 날세조i				<u> </u>		
밖의	(41	(투자	 조합출:		-			1	-	두택차일						
소				· 사용액			784,999	1								
소바공제				합 출연				1	(68) 5	기국납부						
제	-			소기업				1	(69)월세액				공제대상금액			
				<u> </u>				1	(69)철세백 세액공제액							
			<u></u> :의 소=				784,999	1	(70) k	lI액공자	 계		T	103,		

(77)소득·세액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장애인 해당시 해당코드를 기재)를 하며,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								
관계 코드	성 명	718 748						보현	성료		의료비			Ω€	국비
내 · 외국 인	주민등록번호	부녀 자	한부 모	장애 인	자녀	자료 구분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난임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일반	장애인 특수교육
인적	공제 항목에 해당		1			국세청									
하는	: 인원수를 기재 (자녀 : 0 명)					기타	341,700	66,300							
0	장인혁)			국세청									
1	(근로자 본인)					기타	341,700	66,300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각	종 소득ㆍ서	액공제 항목	목					
자	а <u> </u>							신용카드							기부금
구	구분 신용카드 현금영수				-증	직불카드등			도서공연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국서	세청					1,073,710 3,949,423							58,900		
기	타														
국서	국세청														
기	기타														
국서	세청														
기	타														
국서	세청														
기	타														
국서	국세청														
기	타														

작성 방법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사용하며, 이 경우 (9) 근무처명 및 (10)사업자등록번호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근로소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 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KR, 미국:US
- 2.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외국인란에 "외국인 9"를 선택하고 국적 및 국적코드란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자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외국인단일세율 적용'란에 여1를 선택합니다.
- 3. 원천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단위 과세자에 해당할 경우 ③-1에서 여1을 선택하고, ③-2에 소득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종사업장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 4.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I.근무처별소득명세란은 비과세소득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항목별로 적고, II.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서란에는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 및 감면 대상을 해당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기재할 항목이 많은 경우 II.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서란의 (20)비과세소득 계란 및(20)-1 감면세액 계에 총액만 적고, II.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 6.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을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16)-1납세조합란에 각각 근로소득납세 조합과「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적고,「소득세법」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공제금액을 (67)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과 기업형태변경전의 소득은 근무처별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또한, 동일회사 내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곳에서 전입 등을 한 경우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전입하기 전 지점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무처별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 7. (21)총급여란에는 "(16)계"란의 금액을 적되, 외국인근로자로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경우에는 "(16)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고,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8. 종합소득 특별공제((33)~(35))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38)[~] (46))란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 (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 9. 연금계좌((57)~(59))란과 특별세액공제((60) ~ (65))란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